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76
----------	------

2021년 8월 3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김창원 의원(찬성자 25명)
-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8월 3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원 의원)

가.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6.9)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실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2)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의 개정(‘21.06.09)을 반영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용법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총리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 법 시행규칙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신설>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① ~ ③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 현황

- 2021.7월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5대 4,8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 이들의 금년도 활동실적은 7월말 기준으로 총 9,073회 출동하여 연인원 28,578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204회(연인원 977명)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4] 참조)

[표 2] 2021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총 195대 4,832명(현원)으로 구성 활동, 정원은 4,860명 ○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 총 9,073회, 연인원 28,578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월 총 204회, 연인원 977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

[표 3] 서울시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보조 세부실적 현황(2021.7월 기준)

구분	계	화재진압 업무보조	재난발생 대피보조	구조구급 업무보조	화재예방 업무보조	행사지원	안전지원 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건수	9,073	210	115	17	3,935	98	1,754	2,944
인원	28,578	746	270	92	12,991	182	4,427	9,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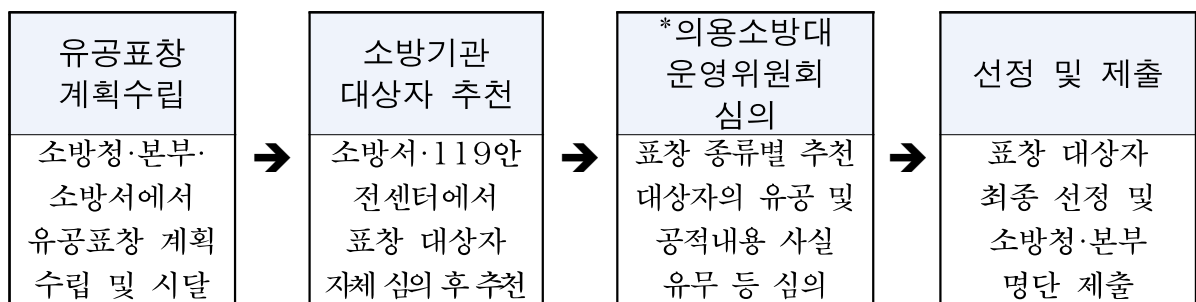
[표 4]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2021.7월 기준)

구분	계	농어촌 일손돕기	장애인 시설봉사	예방접종 지원센터	불우이웃 돕기	기타
건수	204	1	1	152	29	21
인원	977	8	22	670	126	151

-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의욕을 북돋기 위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거쳐 활동실적이 탁월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표 5], [그림 1] 참조)

[표 5] 서울시 의용소방대 포상현황(2019~2021.7월)

구분	계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광역)	시장 (지자체)	청장	서장	기타
2019	534	1	1	28	0	51	29	24	354	46
2020	576	1	1	32	0	69	2	32	397	42
2021	42	0	0	4	0	2	0	0	32	4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본부·소방서에서 구성(외부 위원 포함 5명이상~9명 이하)

[그림 1] 포상대상자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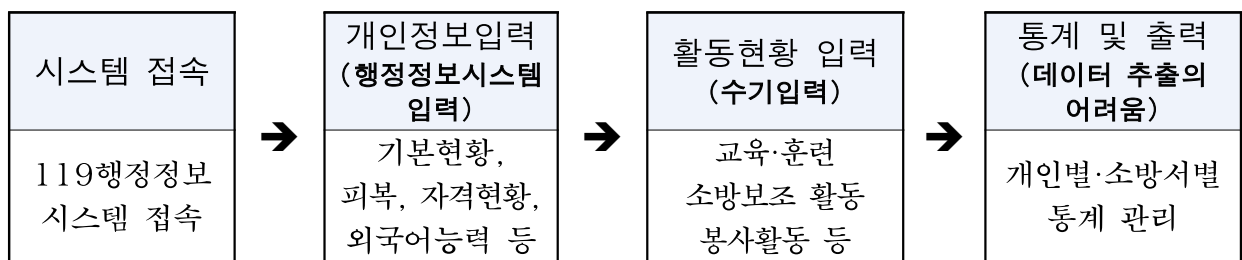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안 제17조제4항의 신설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1)의 개정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

사항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법 시행규칙의 동 조항은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제1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 지난 2021.6.9.일 개정을 통해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관련 조문인 제17조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 그 동안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용소방대 인적사항 등의 기본현황만을 입력하고 나머지 교육 및 훈련, 소방보조활동, 봉사활동 등은 소방서 담당이 각 대원의 실적을 소방활동기록부(종이문서)에 수기로 입력하여 통계관리상 연결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 유효 데이터 추출에 어려움이 따르던 상황이었음. ([그림2] 참조)



[그림 2] 의용소방대 관리시스템

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일례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서 종종 중복적인 포상 사례가 발생해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이 본부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 사료됨.
- 이외에 안 제15조제1항은,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 흡수·통합되면서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이에 따라 ‘총리령(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총리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용 문구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춰 ‘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의용소방대의 활동 내용을 보면, 방역활동지원, 마스크공장 지원, 고령자 예방접종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개인의 활동실적이 충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홍성룡 위원)

답변) 활동실적을 관리·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개개인의 활동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양민규,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6.9)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실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나.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본문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의 조제목 “성과중심의 보상”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항 번호를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u>총리령</u>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 -----<u>법 시행규칙</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p>
<p>①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또는 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p>	<p>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 -----<u>(현행과 같음)</u>----- -----</p> <p>③ ----- -----<u>(현행과 같음)</u>----- ----- -----</p> <p>④ -----</p>

<p>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 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 (현행과 같음) ----- ----- -----</p>
---	---

문서번호

2021072300000004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창원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3

회신일 : 2021.08.04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675,000천원(연평균 135,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35,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개발비용은 2022년 발생하고, 2023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675,000천원(연평균 13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안 제17조제1항)	개발		450,000	-	-	-	-	450,000
		유지·보수		-	56,250	56,250	56,250	56,250	225,000
	소계(b)		450,000	56,250	56,250	56,250	56,250	675,000	
□ 총 비용(b-a)			450,000	56,250	56,250	56,250	56,250	675,000	

-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시스템 = 675,000천원
 - = 개발비용+유지·보수비용
 - = 450,000천원+225,000천원

- 개발비용 = 450,000천원
 - = 의용소방대 모바일앱 개발+의용소방대원 관리 프로그램
 - = 200,000천원+250,000천원

※ 개발비용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개발비용 산출내역 적용

구분	개발내역
의용소방대 모바일앱 개발 (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설정 확인, 생체인증 및 활동 증빙 사진 전송 기능 - 소방출동(활동)기록부 내용작성 및 서명 기능, 출력 가능 - 출동/훈련/홍보/봉사/순찰 등 항목별 활동 기록 - 각종 재난 알림 및 공지사항 전파 - 수당 신청 및 지급 내역 조회 - 의용소방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조회 - 모바일 교육 콘텐츠 제공
의용소방대원 관리 프로그램 (2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원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관리 - 활동 수당 지급 및 관리 - 의용소방대원 각종 신청서 발급 - 대원별 활동 내역 및 성과 관리 - 장학금 및 표창, 후생 복지 지원 내역 관리 - 의용소방대 활동 및 지원 사항 통계 관리

- 유지·보수비용 = 225,000천원
 - = 연간 유지·보수비용×4년
 - = 56,250천원×4년

※ 연간 유지·보수비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1.6)」에 따른 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의 중간값인 12.5%를 적용(450,000천원×12.5%=56,250천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